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1일,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선의원)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함[1].

시·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1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촉진지구 지정요청서와 육성계획서를 갖추어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함[2][3].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2025년 8월 현재 서울 등 총 30개의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지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	2	1	1	1	1	2	7	2	1	1	1	1	2	1	1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촉진지구 지정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현행법 제18조의4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업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4].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은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시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5].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중 유력한 견해인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론, 의회유보설)에 따르면 행정의 중요한 사항(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보는 것이 전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8조(지정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통적 견해이며[6], 판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없는 권리제한 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7].

촉진지구로 지정 받은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은 현행법 제18조의5[8]에 따라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지원은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으로 해제 사유를 규정한 현행 고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6)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12, pp.8-9.

7) 대법원 1990.9.28. 선고89누2493 판결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